

1. 의결주문
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16조제1항 및 제29조 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, 전문개정에 맞추어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법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제25조의2제1항 중 “법 제29조제1항”을 “법 제29조제1항·제2항”으로 한다.

나. 별표 제2호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1항제1호”를 “제2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9조제1항	100이상 300이하	300이상 700이하	700이상 1,500이하	1,500이상 2,000이하	2,000

다. 별표 제2호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1항제3호”를 “제2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1항제4호”를 “제2항제3호”로 한다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07. 17. ~ 08. 26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제1항 중 “법 제29조제1항”을 “법 제29조제1항·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 제2호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1항제1호”를 “제2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9조 제1항	100이상 300이하	300이상 700이하	700이상 1,500이하	1,500이상 2,000이하	2,000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

별표 제2호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1항제3호”를 “제2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1항제4호”를 “제2항제3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의2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 ② (생 략)	제25조의2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 법 제29조제1항 · 제2항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15 - 2777